안성 공도 서해그랑블 입주자 모집공고

문의 031)692-5500

총 976세대

59㎡A·B·C/65㎡/72㎡A·B

■ 이 주택은 주택분양제도 전부 개정 조항(시행일 2015.12.29.)을 입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의 적용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해 주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- 청약 순위에게 간소화 및 청약통장 순위별 요건 완화 : 기존 1, 2 순위 만기시을 → 1 2순위 청약시을 2 가소화 - 만양주택 특별공급 신청 시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 : 기존 무주택세대주만 경우 만양 신청이 가능하었으나 →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(이때해에서 1명만 청약신청 가능) 단,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계속 적용됨 - 예치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에 청약 가능 / 주택규모별 기간(2년) 및 주택규모 상향 시 청약해한기간(3개월) 폐지 - 만양주택 가점제 청약 시 무주택자 1점제도 폐지 : 주택소유 수에 따른 감점 폐지 -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: 기존 60㎡ 이하 → 공시가격 2억만원 이하에서 → 60㎡ 이하 + 공시가격 수도권 2억5천만원 이하, 비수도권 2억만원 이하로 변경

이용방법 및 절차 | 인터넷 | 국민은행 홈페이지(www.kbstar.com)접속 → KB부동산 주택청약 → 인터넷 청약 → 청약신청 | 금융결제원 홈페이지(www.apt2you.com)접속 → APT인터넷 청약 → 청약신청

※ 주택청약 참가은행 : 기업, 국민, 외환, 수협, 농협, 우리, 한국스탠다드차티드, 한국씨티, 대구, 부산, 광주, 제주, 전북, 경남, 하나, 신한은행 ※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방법에 응하시기 바라며,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.

■ 공통사항
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16.05.26) 현재 경기도 안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)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(만 19세 미만인자 중 세대원 전체가 청약 가능한 세대가 있는 경우 제외)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경과하고 납입횟수 6회 이상 납입한 분 (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포함)에 한하여 청약신청 가능하며 1인 1건 청약 가능하오니 청약통장 가입일자 및 납입횟수 등을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청약신청자중 같은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당첨자를 결정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방법는 사업주체가 담당하여 동 공고 내용 추첨을 통해 결정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특별공급 입주자 및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은 해당 주택의 분양권 및 입주권을 전매할 수 없음.
-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 기간
- 본 아파트는 「주택법」 제 38조의2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「주택법」 제43조의2 및 「주택법시행령」 제40조의2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체결일 기준한 날 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되며, 본 아파트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2조에 의거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주택 당첨이력과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. 단,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 가 아니, 당첨 통장은 계약자에게 상환없이 재사용 불가함
-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향후 시행되는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으며,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투기 방지 차별(주택법시행령)
-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거나 적발된 자는 주택법 제 65조 및 제 70조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, 청약 고발되어 처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-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「공인중개사 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자격정지,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.
- 고령자와 다자녀 가정 및 장애인 1 등 우선배정
「주택공급에관한규칙」제25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직 인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녀를 세 명 이상 둔자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직 중 주택공급신청자를 제외 한 나머지 세대원 전체가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인 경우 주택공급 가점제 적용 대상 이 됩니다. 단, 신청자가 양모 경우 다른 충분 배정받을 수 있고,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우선배정 신청 비율 보장 제도에 의거 해당 가점 경우 주택공급 우선순위 주택법 제75조 제3항의 규정